미국대사관 영사과 이민비자계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2 110-710 또는
Unit 15550, APO AP 96205-5550 USA

국제 팩스 822-397-4501, 국내 팩스 02-397-4501, 미군전용 팩스 721-4501

첨부된 SE03.5에 수록된 지시사항을 마친 후에, 비자면접 신청을 하십시오. 비자면접 신청은 이 양식 OF169를 작성하고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과 함께 대사관에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십시오. 팩스 번호와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이민, 약혼, LIFE 법령 (V 또는 K) 비자 면접 신청서 (OF-169)

이민비자 신청자인 본인은 이하 명시된 필요 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서의 면접 때 지참할 것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동반가족의 이주여권 인적사항 페이지를 복사하여 이 진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저는 한국신원조사 결과와 다른 내부 수속절차가 끝나야만 면접일이 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가족 중 한국경찰신원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대사관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하였습니다. 비자 받을 자격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또한 비자 발급 여부에 관한 사전 결정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가 실제로 발급될 때까지는 직장, 학업 또는 사업을 그만두거나 재산정리 또는 최종 여행준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신청을 아래와 같이 할 것입니다.

( ) 1. 혼자
( ) 2. 저의 배우자와 함께
( ) 3. 저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동반자녀의 이름을 인쇄체로 기입하십시오)

_____

_____
(인쇄체로 주신청자의 이름과 케이스 번호)

_____
(인쇄체로 현주소와 우편 번호, 전화와 팩스 번호)

_____
(귀하의 면접날짜를 정하는데 참조할 수 있도록 귀하가 원하는 면접날짜를 적어주세요.)

_____
(주신청자의 서명과 서명한 날짜)

이민, 약혼, LIFE 법령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수속 안내

당대사관은 귀하에게 허가된 이민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귀하가 이민, 약혼 또는 LIFE 법령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이 안내서의 지시 사항들을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날짜를 지켜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www.asktheconsul.org 또는 www.travel.state.gov에서 많은 양식을 전송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사는 언제든 비자발급 여부의 결정을 위해 추가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동봉한 양식 DS-230 제 1부를 각각 가족수대로 작성하고 서명하셔서 지금 이민 비자계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하십시오.

대한민국 이주여권. 귀하가 한국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이주여권(종류: PR 또는 R)을 서울 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0번지 대한재보험빌딩 403호실에 있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이주과, 또는 해외거주자인 경우 가까운 한국영사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가 원하시면 이주여권 수속을 이주공사에 일임하여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증명서. 각 나라의 경찰증명서 필요조건에 관해서는 웹사이트 www.travel.state.gov에서 visa reciprocity을 참조하십시오. 발급 가능한 나라라고 여겨지면 적어도 자신의 국적이 소속된 나라 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미국 제외)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 하였을 경우 해당국의 경찰 증명서는 귀하의 비자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다른 나라의 경찰 증명서는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필요합니다. 수형사실이 있는 분은, 수형사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경찰 신원 조사증명서(KNPC)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만 발급됩니다. 신원조사 신청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지금 대사관으로 제출하십시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첨부한 양식 SEO-11 두통, 한글 겉 표지, 사진 3장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 등본 원본만 각 1통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한 여자인 경우에는 제적등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SEO-11 두통과 사진 2장, 호적등본과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 한 통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외국인인 경우 SEO-11 두통과 사진 2장, 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함께 제출 하십시오. 귀하의 면접약속은 대사관이 경찰신원조회 결과를 받은 후에만 할 수 있으며, 경찰신원조회 결과를 받으려면 대체로 3주 걸립니다.

재정 보증. 이하의 모든 지시사항을 잘 읽고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직계가족 및 우선순위 가족 경우: I-864와 I-864A는 초청자와 가족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미국 공증사무실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연대보증의 경우 연대보증인과 그가족원이 자필로 서명하고 공증을 받은 I-864와 I-864A이어야 합니다. 각 I-864와 I-864A에는 서명자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증명, 현재 지속되고있는 수입증명, 지난 3년 치 연방 세금보고서 사본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 약혼자 및 LIFE 법령의 경우: I-134를 올바르게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현재 지속되고있는 수입/자산 증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 우선순위 고용의 경우: 주신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 나 I-864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후에 동반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I-134를 사용해야 합니다.

비자면접 예약. 이 양식의 페이지 1을 작성하고 각 신청자의 이주여권의 인적사항 페이지 복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대사관으로 보내십시오. 직계가족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IR 및 CR 또는 귀환영주권자-SB), 약혼자와 LIFE 법령비자 신청자들은 내부 확인과 경찰 증명서가 완료되면 4주안에 면접날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외의 다른 신청자(F및E)들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날짜가 신청 가능하여 비자면접을 신청하면 국무성에 비자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날짜는 아무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우선순위날짜가 비자발급 범위에 들지 못하면 그 범위이내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우선순위 날짜에 관해서는 웹사이트 www.travel.state.gov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부 확인과 경찰증명서가 완료되면 우선순위 가족 신청자(F)는 대략 10주내에, 우선순위 고용신청자(E)는 14주내에 면접 날짜를 우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수수료. 각 직계가족, 우선순위 가족 및 고용신청자의 비자 요금은 비자당 335불이며 현금(미국 달러나 원화), 우편환 및 여행자수표로 면접 일에 가져와야 합니다. 개인수표나 신용카드로는 비자요금을 낼 수 없습니다. 이민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개인별로 비자요금을 내야하며, 비자가 거절되더라도 비자요금 335불은 환불 받지 못합니다. 약혼자나 LIFE법령비자 신청자들은 100불을 한미은행에 내시고 영수증을 면접 일에

가져와야 합니다. 한국 이민여권은 37,500원 입니다. 신체검사료는 어른 120,000원, 15세 미만 어린이는 80,000원 입니다.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모든 비용은 별도의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모든 신청자는 다음에 지정한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여의도 성모 병원; 전화 02-3779-15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서울 위생 병원; 전화 02-2210-3511;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29-1번지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전화 02-361-6541/2;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부산 메리놀 병원; 전화 051-461-2220;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
부산 침례 병원; 전화 051-580-1313;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374-75

귀하는 귀하의 신체검사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에 이주여권, 여권용 사진 2장과 **그 원판필름**을 가지고 가십시오.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엑스레이를 큰 봉투에 봉인해서 줄 것입니다.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는 봉인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일 경우는 검사 일로부터 **6**개월, 그 외에는 **12**개월입니다. K/V 신청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접일. 모든 이민신청자는 선약을 해야지만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잘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전자 물품은 허락되지않으며 귀하와 귀하의 소지품들은 조사 받게 됩니다. 대사관에 도착하면 귀하는 귀하의 신청서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해야 합니다. 이날은 귀하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처음 심사하는 날이오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자가 개인면접 없이 비자를 받게 될 것입니다. 대사관은 면접 당일 비자를 신속히 발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일로 발행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를 받기 전에는 여행 준비를 **하지 마십시오**. 수속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장시간 대사관에서 보내셔야 될 것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와 약혼비자는 보통 6개월 유효하오니 귀하가 미국에 가기 원하는 시기보다 충분히 미리 앞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신청자는 비자면접 일에 아래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한 통씩 필요하나, 원본이 분실되거나 손상될 경우를 대비하여 복사본을 마련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이 필요하시면 팩스로 연락하십시오. 귀하의 비자 종류는 통보서 (Packet3 통보서 또는 SEO-5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비서류	*K1/2*	*K3/4*	*V1/2*	*CR/IR*	*F*	*E*	*SB/IW*	*DV*
6 개월 유효한 여권 (한국인은 이주여권)	O	O	O	O	O	O	O	O
DS-230, part 1	O	O	O	O	O	O	O	O
DS-230, part 2	X	X	X	O	O	O	O	O
DS-156	O	O	O	X	X	X	X	X
비자신청서 첨부서류	DS-156K	X	DS-3052	X	X	X	X	X
출생, 사망, 입양, 결혼, 이혼증명서 또는 1 년 이내의 호적등본	O	O	O	O	O	O	O	O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개봉되지 않은것)	O	O	O	O	O	O	O	O
예방접종 보고서	X	X	X	O	O	O	O	O
재정보증서 I-864/I-864A 와 보충서류	X	X	X	O	O	X	X	X
재정보증서 I-134 와 보충서류	O	O	O	X	X	X	O	X
오른쪽 측면 천연색사진 2 장	X	X	X	O	O	O	O	O
앞면사진 2 장	O	O	O	X	X	X	X	X
SEO-97	O	O	X	O	O	O	O	O
경찰 증명서	O	O	O	O	O	O	O	O
이전에 사용한 여권	O	O	O	O	O	O	O	O
군제대증(해당자만), 체포, 수감기록 및 판결문, 미국이민서류를 보충하는 서류	O	O	O	O	O	O	O	O
교육및 훈련에 관한 서류	X	X	X	X	X	X	X	O
영어로 되지않은 모든서류의 영문번역	O	O	O	O	O	O	O	O

(O: 예, X: 아니오)

구비서류	*K1/2*	*K3/4*	*V1/2*	*CR/IR*	*F*	*E*	*SB/IW*	*DV*
$335 IV 수수료 (원 또는 달러)	X	X	X	O	O	O	O	O
$100 MRV 수수료 영수증	O	O	O	X	X	X	X	X
$100 DV 비자 수속료	X	X	X	X	X	X	X	O

(O: 예, X: 아니오)

경고

Packet 3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비자 수속을 하지 않으면 이민법 제 203(g)조항에 의거하여 등록이 영원히 취소 됩니다. 주소를 변경하면 즉시 대사관에 서신으로 알려 주십시오. 비자를 받기 전에는 출국을 위한 여행준비(비행기표 예매 등)를 하거나, 재산을 처분하거나, 직장을 사직하거나, 사업을 정리 하지 마십시오.

동봉: 위에 설명한 양식들

s/iv/seofm/SEO 3.5, OCT02